제34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4. 2. 27.

「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

경 상 북 도 의 회 (박순범 의원) 안녕하십니까?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.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!

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「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전국적으로 역전세와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를 방지하기 위한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등 여러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경상북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

지원하여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

○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피해 발생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하여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

- 안 제2조에서 5조까지 조례의 용어의 뜻과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, 보증료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, 보증료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6조에서는 보증료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, 안 제7조에서는 보증료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
O 안 제8조에서는 보증금 반환보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
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!

금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

원안대로 심의·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4. 2. 27.

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